|  |  |  |
| --- | --- | --- |
| **비영리조직 면세자격인정**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4]1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제26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이하 <실시조례>로 약칭) 제 84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조직에 대한 자격인정관리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본 통지에 의거 인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은 반드시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1) 국가 유관 법률법규에 따라 설립 혹은 등기한 사업단위, 사회단체, 펀드, 민간 비기업단위, 종교활동 장소 및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인정하는 기타 조직이어야 할 것  (2)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할 것  (3) 취득한 수입이 해당 조직에 관련되거나 합리적인 지출에 사용된 것 이외에는 모두 등기심사 혹은 정관규정 상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 사업에 사용할 것  (4) 재산 및 그 증식분dl 분배에 사용ehl지 않을 것. 단, 합리적인 급여지출을 포함하지 않음.  (5) 등기심사 또는 정관규정에 따라 해당 조직이 말소 후에 남은 재산을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등기관리기관에서 해당 조직과 성질, 취지가 같은 조직에 기부하고 사회에 공고 할 것  (6) 투입인은 해당 조직에 투입한 재산에 대해 어떠한 재산권리를 보유하거나 향유하지 않을 것, 본 조항에서 투입인은 각급 인민정부 및 그 부문 외의 법인, 자연인과 기타조직을 지칭함.  (7) 담당인원의 임금 및 혜택의 지출은 규정한 비율 내에서 억제하며 변형적으로 해당 조직의 재산을 분배해서는 안됨. 그 가운데 담당인원의 평균 급여수준은 전년도 세무등기 소재지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담당인원의 복리는 국가 유관규정의 집행에 따름.  (8) 당해년도에 신설되었거나 등기한 사업단위, 사회단체, 펀드 및 민간 비기업단위 이외의 사업단위, 사회단체, 펀드 및 민간 비기업단위로서 전년도 검사에 신청한 결과가 “합격”이어야 할 것.  (9) 취득한 과세수입 및 이에 관련된 원가, 비용, 손실에 대하여는 면세수입 및 이에 관한 원가, 비용, 손실과 구분하여 정산함.  2. 성급(성급 포함)이상의 등기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 및 등기한 비영리조직이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 성급세무주관기관에 면세자격을 신청하며, 본 통지에서 규정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지)급 또는 현급 등기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 또는 등기한 비영리조직이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조직 소재지의 시(지)급 혹은 현급 세무주관기관에 면세자격을 각각 신청하며 본 통지에서 규정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정,세무부문은 상술한 관리권한에 따라, 면세자격을 향유하는 비영리조직에게 심사결정확인을 연합하여 진행하며, 동시에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3. 면세자격을 신청하여 향유하는 비영리조직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보고;  (2) 사업단위, 사업단체, 펀드, 민간 비기업단위 정관 혹은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제도;  (3) 세무등기증 복사본;  (4) 비영리조직등기증 복사본;  (5) 전 연도 자금출처 및 사용상황, 공익활동과 비영리활동의 명세상황;  (6) 자질이 있는 중개기구에서 감정을 받은 전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심계보고;  (7) 등기관리기관이 사업단위, 사회단체, 펀드, 민간 비기업단위에 발급한 전연도의 연도 검사결론;  (8) 재정, 세무부문이 요구한 기타 자료 제공.  4. 비영리조직 면세우대 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비영리조직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내에 재심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심신청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심이 불합격될 때 면세우대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은 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 재심은 처음으로 면세우대 자격을 신청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비영리조직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금징관법>으로 약칭)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이하 <세칙>으로 약칭) 등 유관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진행하고 기한에 맞춰 납세신고를 진행한다. 면세자격을 취득한 비영리조직은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면세수속을 진행하고, 면세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면세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주관부문에서 추징한다. 면세자격을 취득한 비영리조직을 말소시킬 때에 잉여재산에 대한 처분이 본 통지 제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그 납부하여야 할 기업소득세액을 추징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비영리조직이 제출한 납세신고서 및 유관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당해년도에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유관규정에서의 면세조건 수입에 부합할 때에는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하고, 당해년도 면세조건 수입에 불부합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이 세수우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영리 조직이 본 통지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비영리 조직 면세자격을 심사비준한 재정, 세무부문에 보고하고, 그 진행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한다.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을 심사비준한 재정, 세무부문은 본 통지규정의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비영리조직의 면세우대자격에 대해 재점검하고 재점검 불합격인 경우 그가 향유하고 있는 면세우대 자격을 취소한다.  6. 면세우대정책 향유를 인정받은 비영리조직은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  (1) 사업단위, 사회단체, 펀드 및 민간 비기업단위가 기간을 경과하여 연검에 참가하지 않거나 연검한 결과가 ‘불합격’일 때  (2) 신청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허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3) 납세를 기피하거나 타인을 방조하여 납세기피 행위를 하였을 때  (4) 관련 거래 또는 비관련 거래와 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변칙적으로 해당 조직재산을 이전, 은닉, 분배하였을 때  (5)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을 위반하여 세무기관의 처벌을 받았을 때  (6) 등기관리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을 때  상술한 제(1)항 규정의 상황으로 면세우대자격이 취소된 비영리조직에 대해 재정, 세무부문은 1년내에 해당조직의 인정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상술한 규정의 제1항을 제외한 기탕 상황으로 면세우대자격이 취소된 비영리조직에 대해 재정, 세무부문은 5년내에 해당 조직의 인정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7. 본 통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 인정관리에 관한 유관문제의 통지> (재세(2009)12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4년 1월 29일 |  | **关于非营利组织免税资格认定**  **管理**  **有关问题的通知**  财税〔2014〕13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第二十六条及《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以下简称《实施条例》）第八十四条的规定，现对非营利组织免税资格认定管理有关问题明确如下：  　　一、依据本通知认定的符合条件的非营利组织，必须同时满足以下条件：  　　（一）依照国家有关法律法规设立或登记的事业单位、社会团体、基金会、民办非企业单位、宗教活动场所以及财政部、国家税务总局认定的其他组织；  　　（二）从事公益性或者非营利性活动；  　　（三）取得的收入除用于与该组织有关的、合理的支出外，全部用于登记核定或者章程规定的公益性或者非营利性事业；  　　（四）财产及其孳息不用于分配，但不包括合理的工资薪金支出；  　　（五）按照登记核定或者章程规定，该组织注销后的剩余财产用于公益性或者非营利性目的，或者由登记管理机关转赠给与该组织性质、宗旨相同的组织，并向社会公告；  　　（六）投入人对投入该组织的财产不保留或者享有任何财产权利，本款所称投入人是指除各级人民政府及其部门外的法人、自然人和其他组织；  　　（七）工作人员工资福利开支控制在规定的比例内，不变相分配该组织的财产，其中：工作人员平均工资薪金水平不得超过上年度税务登记所在地人均工资水平的两倍，工作人员福利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八）除当年新设立或登记的事业单位、社会团体、基金会及民办非企业单位外，事业单位、社会团体、基金会及民办非企业单位申请前年度的检查结论为“合格”；  　　（九）对取得的应纳税收入及其有关的成本、费用、损失应与免税收入及其有关的成本、费用、损失分别核算。  　　二、经省级（含省级）以上登记管理机关批准设立或登记的非营利组织，凡符合规定条件的，应向其所在地省级税务主管机关提出免税资格申请，并提供本通知规定的相关材料；经市（地）级或县级登记管理机关批准设立或登记的非营利组织，凡符合规定条件的，分别向其所在地市（地）级或县级税务主管机关提出免税资格申请，并提供本通知规定的相关材料。  　　财政、税务部门按照上述管理权限，对非营利组织享受免税的资格联合进行审核确认，并定期予以公布。  　　三、申请享受免税资格的非营利组织，需报送以下材料：  　　（一）申请报告；  　　（二）事业单位、社会团体、基金会、民办非企业单位的组织章程或宗教活动场所的管理制度；  　　（三）税务登记证复印件；  　　（四）非营利组织登记证复印件；  　　（五）申请前年度的资金来源及使用情况、公益活动和非营利活动的明细情况；  　　（六）具有资质的中介机构鉴证的申请前会计年度的财务报表和审计报告；  　　（七）登记管理机关出具的事业单位、社会团体、基金会、民办非企业单位申请前年度的年度检查结论；  　　（八）财政、税务部门要求提供的其他材料。  　　四、非营利组织免税优惠资格的有效期为五年。非营利组织应在期满前三个月内提出复审申请，不提出复审申请或复审不合格的，其享受免税优惠的资格到期自动失效。  　　非营利组织免税资格复审，按照初次申请免税优惠资格的规定办理。  　　五、非营利组织必须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税收征管法》）及《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以下简称《实施细则》）等有关规定，办理税务登记，按期进行纳税申报。取得免税资格的非营利组织应按照规定向主管税务机关办理免税手续，免税条件发生变化的，应当自发生变化之日起十五日内向主管税务机关报告；不再符合免税条件的，应当依法履行纳税义务；未依法纳税的，主管税务机关应当予以追缴。取得免税资格的非营利组织注销时，剩余财产处置违反本通知第一条第五项规定的，主管税务机关应追缴其应纳企业所得税款。  　　主管税务机关应根据非营利组织报送的纳税申报表及有关资料进行审查，当年符合《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和有关规定免税条件的收入，免予征收企业所得税；当年不符合免税条件的收入，照章征收企业所得税。主管税务机关在执行税收优惠政策过程中，发现非营利组织不再具备本通知规定的免税条件的，应及时报告核准该非营利组织免税资格的财政、税务部门，由其进行复核。  　　核准非营利组织免税资格的财政、税务部门根据本通知规定的管理权限，对非营利组织的免税优惠资格进行复核，复核不合格的，取消其享受免税优惠的资格。  　　六、已认定的享受免税优惠政策的非营利组织有下述情况之一的，应取消其资格：  　　（一）事业单位、社会团体、基金会及民办非企业单位逾期未参加年检或年度检查结论为“不合格”的；  　　（二）在申请认定过程中提供虚假信息的；  　　（三）有逃避缴纳税款或帮助他人逃避缴纳税款行为的；  　　（四）通过关联交易或非关联交易和服务活动，变相转移、隐匿、分配该组织财产的；  　　（五）因违反《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而受到税务机关处罚的；  　　（六）受到登记管理机关处罚的。  　　因上述第（一）项规定的情形被取消免税优惠资格的非营利组织，财政、税务部门在一年内不再受理该组织的认定申请；因上述规定的除第（一）项以外的其他情形被取消免税优惠资格的非营利组织，财政、税务部门在五年内不再受理该组织的认定申请。  　　七、本通知自2013年1月1日起执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非营利组织免税资格认定管理有关问题的通知》（财税〔2009〕123号）同时废止。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4年1月29日 |